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곽상언 · 조계원 · 권향엽
서영석 · 이개호 · 김교홍
김동아 · 조승래 · 박수현
조정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·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·평생교육·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.

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

하는 한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,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 22·제39조의23 신설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급식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,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노인종합복지관

제31조의2 중 “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”을 “제37조제2항,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9조의22 및 제39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2(노인종합복지관) ①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23(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3항 중 “者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”를 “자,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,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”을 “제37조제4항,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3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제3호 중 “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”을 “제37조제1항 ·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7항 중 “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,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호 중 “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”을 “제37조제2항, 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3제2항”으로, “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 ·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급식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,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第31條(老人福祉施設의 종류)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各號와 같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31조의2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	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<u>노인복지시설-----각 호-----</u>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노인종합복지관</u> 제31조의2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

다른 신고와의 관계) 제33조제2항, 제35조제2항, <u>제37조제2항</u> 및 <u>제39조제2항</u>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 老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의 施設로 한다. 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. 3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다른 신고와의 관계) ----- -----<u>제37조제2</u> <u>항,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3</u>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-- ----- -----. <u><삭제>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39조의22(노인종합복지관)</u>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
--	--

<신 설>

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23(노인종합복지관의 설

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第40條(변경·廢止 등) ①·②
(생략)

③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老人
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
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
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
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
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
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
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
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
· 郡守· 區廳長에게 미리 申告
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, 노
인의료복지시설의 장, 노인여가
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
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
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
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
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
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
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
하여야 한다.

제40조(변경·폐지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자, 제39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
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
제39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
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한
자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노인여
가복지시설의 장, 재가노인복지
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
관의 장-----

-----.

⑥ (생 략)
 第43條(사업의 정지 등) ① (생 략)
 ② 市長・郡守・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.
 1.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
 2. ~ 5. (생 략)
 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④ (생 략)

⑥ (현행과 같음)
 제43조(사업의 정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-----

 -----.
 1. 제37조제4항,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3제4항-----

 2. ~ 5. (현행과 같음)
 ③ -----

 -----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-----

 -----.
 ④ (현행과 같음)

第45條(費用的 부담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1. 2. (생 략)

3. 제33조제1항·제35조제1항·
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
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
용

제46조(비용의 수납 및 청구) ①
~ ⑥ (생 략)

⑦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
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第38條
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
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
편의를 제공하는 者가 그 施設
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
요되는 費用을 收納하고자 할
때에는 미리 市長·郡守·區廳長
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제45조(비용의 부담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제37조제1항·제39조제1항 및
제39조의23제1항-----

제46조(비용의 수납 및 청구) ①
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노인여가복지시설, 제38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
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5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33조제2항, 제35조제2항, <u>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</u>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·노인공동생활가정·노인복지주택·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· <u>노인여가복지시설</u> 또는 <u>재가노인복지시설</u> 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	1. ----- <u>제37조제2항, 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노인여가복지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</u>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